지주회사, 조세조약 및 실체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싱가포르 지주회사

주식유한 비상장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Pte. Ltd.)는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 설계 기구입니다. 지역 그룹은 아시아 자회사를 보유하는 데 이를 사용하고, 가문은 흔히 신탁 아래에 두고 투자를 보유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매력은 조세제도의 몇 가지 특징에 있습니다. 회사는 과세소득의 17% 단일 세율로 과세되며, 과세소득 중 처음 20만 싱가포르달러에 대해서는 부분 면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및 2026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이 최대 4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주어집니다.[1]

싱가포르 거주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주주 단계에서 면세되며, 주주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 원천징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 처분이익은 상황상 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전항(safe harbour)이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회사가 최소 24개월 동안 계속하여 주식의 최소 20%를 보유한 경우 주식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2] 이 안전항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13W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종전의 2027년 12월 31일 종료일을 삭제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Section 10L에 해당하는 해외 처분이익은 보호하지 않습니다.[3]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 원천 배당도 해외에서 최소 15%의 표면세율로 과세된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4]

해외 처분이익과 Section 10L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는 해외 지분 보유지로서 싱가포르의 매력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에서 실질적 활동이 없는 회사도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원천소득 제도를 검토하던 국제기구들이 던지기 시작한 질문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법 Section 10L로 답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의 매각 또는 처분에 대해, 해당 실체가 관련 그룹에 속하고 싱가포르에 적절한 경제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 자산 처분이익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 지식재산권의 처분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그룹의 모든 실체가 싱가포르에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어느 한 실체라도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그 그룹은 관련 그룹에 해당합니다.[5]

이 규칙은 진정한 실체를 갖춘 그룹의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순수 지분보유 실체는 설립 준거법이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운영이 싱가포르에서 관리·수행되며, 자체 또는 외부 위탁 제공자의 것이든 싱가포르에 적절한 인적 자원과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으면 실체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 비서만 사용하는 등록 주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6] 그 밖의 실체는 핵심 소득창출 활동에서 실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싱가포르에 직원도 의사결정도 없이 싱가포르 주소에서 해외 지분을 보유하던 서류상 회사에 미칩니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싱가포르는 약 100개 관할권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한적 협정 및 정보교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외로 지급되는 이자에는 15%, 사용료에는 10%의 싱가포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조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습니다.[7] 이 네트워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크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주요 유럽 경제국 및 스위스를 포괄합니다. 지역 지주회사에게 그 주된 가치는 해외 자회사가 싱가포르로 지급하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혜택은 싱가포르 회사가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약 상대국들은 실체가 없거나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인 지주회사에 대해 혜택을 점점 더 부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7년 OECD 다자간협약(Multilateral Instrument)에 서명하였으며, 이 협약은 그것이 수정하는 조약에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을 추가합니다. 인도와의 조약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줍니다. 제I편 제III장에서 설명하듯이 인도는 이제 싱가포르 거주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인도 회사 주식의 처분이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홍콩이나 미국과는 포괄적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8]

실체와 글로벌 최저한세

2025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그룹은 추가적인 제약에 직면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최저한세)법(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은 OECD가 개발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면서,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과 국내 추가세액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그룹의 첫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9] 적용 대상 그룹에게 싱가포르 지주회사는 더 이상 글로벌 최저한세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 둘지에 관한 결정은 인프라, 인재 및 법적 확실성에 좌우되며, 이는 제I편에서 검토합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기업서비스 제공자들도 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2024년 7월 2일 기업서비스제공자법(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5년 6월 9일 시행되었으며, 그날부터 모든 기업서비스 제공자는 ACRA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으로서 명의 이사(nominee director)로 활동하려면 그 사람의 적격성과 적정성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확인한 등록 제공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10] 이 개혁은 외국인이 명의인을 통해 얼마나 쉽게 싱가포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2023년 자금 세탁 사건에 뒤이어 이루어졌습니다.

가문 구조 속의 지주회사

아시아 가문의 전형적인 구조에서는 신탁이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 싱가포르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운영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흔히 싱글 패밀리오피스가 운용하는 가변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y, VCC)를 소유합니다. 신탁은 승계 계획과 보호를, 지주회사는 유한책임과 조세조약 접근을, VCC는 세제 인센티브 아래 유동자산의 전문적 운용을 제공합니다.

이제 각 계층에는 고유한 의무가 따릅니다. 신탁은 수탁자에게 실질적 소유자를 공개하여야 하고, 지주회사는 지배자 명부를 유지하고 해외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실체를 입증하여야 하며, 펀드 기구에는 매년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면제된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기성 회사(shelf company)와 명의 이사로 싱가포르 구조를 조립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실제 사람과 실제 의사결정을 싱가포르에 둘 준비가 된 가문에게 잘 작동하는 일련의 기구들입니다.

주

1. 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ir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7% 단일 세율; 2020년 과세연도부터 일반 과세소득 중 처음 1만 싱가포르달러에 대해 75%, 다음 19만 싱가포르달러에 대해 50% 면제, 최대 10만 2,500싱가포르달러; 2025년 및 2026년 과세연도 법인세 환급 50%(2026년 과세연도는 2026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40%에서 상향), 적격 회사에 대한 현금 보조금 2,000싱가포르달러를 포함하여 최대 4만 싱가포르달러. ↩

2. PwC, *Worldwide Tax Summaries*, “Singapore: Corporate – Withholding taxes” 및 “Singapore: Corporate – Income determination”, 최종 검토 2026년 7월 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일,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없음; 싱가포르 거주 회사가 지급한 배당은 수령인 단계에서 면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없음, 다만 단기 또는 반복적 처분은 영업이익으로 취급될 수 있음; 최소 24개월 동안 계속하여 최소 20%를 보유한 주식의 처분에 대한 면세. ↩

3. KPMG Singapore, *Tax Alert*, Issue 11, 2025년 12월, "Updates on non-taxation of companies' gains on disposal of equity investments",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 13W는 2012년 예산안에서 도입; 최소 24개월 동안 계속하여 최소 20%의 지분 보유; 2025년 예산안의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 종료일을 삭제하여 제도를 영구화함; s 10L에 해당하는 해외 원천 처분이익은 s 13W와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수령 시 과세; 안전항에 관한 IRAS e-Tax Guide 개정(제4판). ↩

4. Income Tax Act 1947, s 13(8)(거주자가 수령한 해외 원천 배당, 해외 지점 이익 및 해외 용역소득에 대한 면세, 과세 요건 및 최소 15%의 표면세율 조건 적용). ↩

5. IRAS, e-Tax Guide "Income Tax: Tax Treatment of Gains or Losses from the Sale of Foreign Assets" (제3판, 2025년 6월 6일), 제2.3~2.5항, 제4.1~4.2항 및 제5.3항: 대상 실체가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 자산 매각이익은 해당 실체가 싱가포르에 적절한 경제적 실체를 갖추지 못하거나 그 이익이 해외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경우 s 10(1)(g)에 따라 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처분; 제도는 s 10L에 입법됨; 관련 그룹의 정의. ↩

6. IRAS, 해외 자산 매각에 관한 e-Tax Guide, 앞의 주, 제8.2~8.3항 및 주 14: 순수 지분보유 실체의 요건; "adequate premises"는 직원용 사무실, 관계 실체와 공유하는 사무공간 또는 외부 위탁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로 충족;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지 않는 단순 등록 주소로는 충분하지 않음. ↩

7. IRAS, "List of DTAs, Limited DTAs and EOI Arrangements", iras.gov.sg, 최종 갱신 2026년 2월 4일,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around 100 jurisdictions"를 포괄하는 협정. IRAS,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Tax Rates", ir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이자 15%, 사용료 10%. PwC, *Worldwide Tax Summaries*, "Singapore: Corporate – Withholding taxes", 앞의 주, 98개 관할권의 조약 세율 수록. ↩

8. IRAS, 싱가포르–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통합본(비준, MLI), 2019년 10월 1일, ir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와 인도는 2017년 6월 7일 MLI에 서명; 제3차 의정서는 2016년 12월 30일 서명, 2017년 2월 27일 발효, 제13조(양도소득) 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그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PwC, *Worldwide Tax Summaries*, "Singapore: Corporate – Withholding taxes", 최종 검토 2026년 7월 2일, 주 5c: "Treaties with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cover only shipping and air transport activities."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signs agreement with Hong Kong to avoid double taxation on income from operating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mof.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9. Allen & Gledhill,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 in operation on 1 January 2025", allenandgledhill.com,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4년 12월 30일 관보에 게재된 시행 고시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다국적기업 추가세(Multinational Enterprise Top-up Tax); 국내 추가세;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MNE 그룹의 첫 회계연도. ↩

10. ACRA,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acra.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 및 Companie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2024는 2024년 7월 2일 통과; 2025년 6월 9일 시행; CSP의 의무 등록; 업으로서 활동하는 명의 이사는 그 사람이 적격하고 적정하다고 확인한 등록 CSP를 통해서만 활동 가능.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